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70
----------	------

발의연월일 : 2024. 8. 29.

발의자 : 김미애 · 김예지 · 박상웅
인요한 · 강승규 · 박준태
이종배 · 임이자 · 김종양
박수민 · 조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 · 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

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 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66조제5호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1호의3, 제2
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진행 중인 분쟁조정 사건 및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사무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분쟁조
정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부의 위원은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
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행한 행위나 명

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행위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
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허위조작정보</u>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 ----- <u>정보 및 허위조작정보</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	③ ----- ----- <u>제1항에 따른 정보</u> ----- -----

<p><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제44조의10(<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p> <p>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u>정보</u>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u>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u>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p> <p>③ <u>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u>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p>	<p><u>4. 혀위조작정보</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의10(<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① ----- ----- ----- ----- <u>정보 및 혀위조작정보</u> ----- ----- ----- ----- ----- <u>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u>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u> ----- ----- ----- --. <u><삭 제></u></p>
--	---

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필요한-----
-----.

제44조의11(손해배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